

국회운영위원회

우 150-701 영등포구 여의도동 1 / 전화(02)788-2900 / 전송(02) 788-3351
 국회운영위원회 입법조사관 이계인 담당자 김성대

문서번호 운영 제 95 호

시행일자 2001. 9. 6. (목)

수신 의 장

참조

취급		위원장
보존	년	이성욱
수석 전문위원	김	
심의관	국	
조사관	인	

제목 정치개혁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제안

제225회국회(임시회) 제3차 국회운영위원회(2001. 9. 6)에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국회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하고 이를 붙임과 같이 제안합니다.

붙임 정치개혁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450부. 끝.

국회운영위원장

정치개혁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안년월일 : 2001. 9.

제안자 : 국회운영위원장

주 문

가.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, 정당법,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및 국회법 등 정치관계법을 심의·개정하기 위하여 국회법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국회내에 「정치개혁특별위원회」를 구성한다.

나. 위원수는 16인으로 한다.

다. 특별위원회의 활동기한은 200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제안이유

정당, 정치자금, 선거제도 및 국회제도 등의 효율적 개선을 통한 정치문화의 선진화와 국민들의 정치개혁여망에 부응하는 지속적인 정치제도개혁을 이룩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임.

서 면 동 의 서

수신 국회운영위원장

제목 정치개혁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서면동의

국회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첨과 같이 정치개혁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국회운영위원회안으로 제안할 것을 동의합니다.

첨부 정치개혁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부. 끝.

2001년 9월 6일

동 의 자

차承國

정치개혁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

의안	
번호	

제안년월일 : 2001. 9.

제안자 : 국회운영위원장

주 문

가.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, 정당법, 정치자금에관한법률 및 국회법 등 정치관계법을 심의·개정하기 위하여 국회법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국회내에 「정치개혁특별위원회」를 구성한다.

나. 위원수는 16인으로 한다.

다. 특별위원회의 활동기한은 200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제안이유

정당, 정치자금, 선거제도 및 국회제도 등의 효율적 개선을 통한 정치문화의 선진화와 국민들의 정치개혁여망에 부응하는 지속적인 정치제도개혁을 이룩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임.

서 면 동 의 서

수신 국회운영위원장

제목 정치개혁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서면동의

국회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첨과 같이 정치개혁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국회운영위원회안으로 제안할 것을 동의합니다.

첨부 정치개혁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부. 끝.

2001년 9월 6일

동 의 자

홍준명

정치개혁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

의안	
번호	

제안년월일 : 2001. 9.

제안자 : 국회운영위원장

주 문

- 가.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, 정당법, 정치자금에관한법률 및 국회법 등 정치관계법을 심의·개정하기 위하여 국회법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국회내에 「정치개혁특별위원회」를 구성한다.
- 나. 위원수는 16인으로 한다.
- 다. 특별위원회의 활동기한은 200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제안이유

정당, 정치자금, 선거제도 및 국회제도 등의 효율적 개선을 통한 정치문화의 선진화와 국민들의 정치개혁여망에 부응하는 지속적인 정치제도개혁을 이룩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임.

<위원회>

**정치개혁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
제안설명**

2001. 9.

○ ㉠ ㉡ ㉢ 위원입니다.

○ ㉣ ㉤ ㉥ 위원과 본위원이 서면동의한 「정치개혁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
○ 동 결의안은

정당, 정치자금, 선거제도 및 국회제도 등의 효율적 개선을 통한 정치문화의 선진화와 국민들의 정치개혁여망에 부응하는 지속적인 정치제도개혁을 이룩하기 위하여 「정치개혁특별위원회」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.

○ 동 특별위원회는

첫째,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, 정당
법, 정치자금법 및 국회법 등
정치관계법을 심의·개정하고,
둘째, 위원수는 16인으로 하며,
셋째, 그 활동기한은
2001년 12월 31일까지로
하고자 합니다.

○ 자세한 내용은

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
아무쪼록 동 결의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
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○ 감사합니다.